

신용불량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채권자 박 준 주

소송대리인 이상훈, 하승수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0 서정빌딩 4층
(TEL : 587-9400, FAX : 587-9373)

채무자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서울 중구 명동 1가 4의 1
대표자 이동호

신청 취지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채권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별지목록기재 신용정보의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채권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1999. 2. 6. 기준으로 9개 금융기관
으로부터 16건의 신용불량자 등록이 된 사람입니다(소갑제1호증 참조).

나. 채무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신용정
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신
고를 받아 신용불량자를 등록하는 기관입니다.

2. 피보전 권리에 대하여

가. 채권자는 1992. 10.경부터 1993. 4.경까지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REDACTED]
[REDACTED]에서 채권자의 올케 신청외
[REDACTED](이후 이혼함)의 요청에 따라 위 [REDACTED]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위 [REDACTED]은 채권자 몰래 위 아파트 안방 장통속
지갑에서 채권자 소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애경백화
점 회원 카드 등 10여개가 넘는 신용카드 등을 채권자 명의로 불법
발급받았습니다. 그 뒤 채권자는 10여개가 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체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된 후에서야 위와 같은 신분증 절
취사실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위 [REDACTED]을 찾았으나 이미 [REDACTED]은
자취를 감춘 뒤이었습니다. 당시 [REDACTED]은 채권자의 신분증 등을 절취
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제 자리로 놓았고, 나중에 안 사실이
지만 대금 청구지도 채권자의 주거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채
권자로서는 위 [REDACTED]이 사라지기 전까지 전혀 위와 같은 사실을 눈
치채지 못하였습니다.

나. 그러던 중 1994. 10.경 신청외 애경백화점이 채권자에 대하여 연체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권자는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소송에서 카드의 불법 발급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리자면, 당시 1심재판에서는 재판 절차를 모르던 채권자가 첫 기일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결국 의제자백으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 소외 [REDACTED]이 채권자의 입장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애경백화점에 채권자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채권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자기가 채권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애경백화점 회사 직원인 소외 000로부터 본인확인을 받은 다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소갑제2호증 참조).

다. 위 판결이후 신청외 제일은행 방배동 지점에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2회 쌍불로 소취하 간주되었고(소갑제3호증 참조)신청외 삼풍건설산업(주)에서도 채권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곧바로 이를 취하하였으며(소갑제4호증 참조), 이와 별도로 채권자는 위 [REDACTED]을 상대로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현재 까지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소갑제5호증 참조. 다만 최근 들리는 말로는 위 [REDACTED]이 사망했다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라. 그동안 채권자는 따로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만한 행동을 한 바 없기 때문에, 현재 채권자가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된 16건 모두 위 [REDACTED]이 채권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불법 발급받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신용 불량의 최초 발생일을 살펴보면 대부분 1994년도이고, 현재까지도 각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측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 금융기관은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를 할 당시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 신용불량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대출 체제는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만을 요구하는 등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선진화된 금융기관으로 가기 위하여는 과거의 담보 위주의 대출에서 개인·기업의 신용,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전에 '신용불량자 등재제도'를 마련하여 개인의 신용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일단 개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신용카드의 신규 발급 및 사용은 물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

라서 금융기관이 한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려면 사전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만일 등재 후 그 사유를 정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는 위 '신용불량자 등재제도'를 채권 회수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호출기나 휴대폰을 가입하고 이동통신업체에서 막연히 부모들에게 연체요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많았는데, 이 경우도 아무리 부모가 사정을 설명하더라도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의 경우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어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금융기관의 뜻에 따라 모든 대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는 '신용불량자 등재제도'가 당초의 취지에 반하여 무리하게 금융기관의 편의에만 치중하여 채권회수의 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운영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1999. 2. 6.자 채권자의 신용정보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신용불량 등재제도를 악용하고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구제에는 무관심한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위 2. 나.에서 살펴보았듯이 애경백화점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유 0104, 발생기관명 애경백화점, 발생일

1995/04/20, 제공일 1995/04/21, 금액 1,476,000」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2. 다.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일은행 방배동 지점 또한 위와 같은 대출(또는 카드 발급)당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한 후 2회 쌍불하여 소취하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 8024, 발생기관명 제일 방배동(지), 발생일 1995/05/06, 제공일 1995/05/11, 금액 6,011,000원」과 「사유 9014, 발생기관명 제일 방배동(지), 발생일 1997/03/31, 제공일 1997/04/11, 금액 12,578,000원」로 계속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별도로 기재된 것은 일정기간 연체된 경우 별도로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타 금융기관 또한 일단 채권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켜 놓은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채권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만 하는 형편입니다.

라. 그동안 채권자는 신분증 보관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4년동안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위 애경백화점 판결전에는 9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번갈아 전화가 연체대금을 독촉받았고, 위 판결을 받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음에도 전혀 달라진 것없이 각 금융기관의 독촉은 계속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모든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그 동안의 정황을 설명하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반말과 욕설로 채권자를 위협하였고, 간혹 채권자의 사정을 이해하는 경우에는 얼마후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강압적인 전화로 채권자를 협박하였고, 심한 경우 집에 찾아와 대문을 걷어 차는 일도 발생하여 채권자는 이로 인한 노이로제까지 걸린 상태입니다. 그동안 채권자는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계속적으로 일방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어 왔고, 단지 금융기관을 상대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만 계속하여 보냈을 뿐입니다(소갑제6호증 참조).

4년이 넘도록 각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금융기관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기관은 무조건 채권자를 신용불량자로 계속하여 등재한 후 채권 회수에만 연연해 왔습니다. 얼마전 삼성카드주식회사에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최후 형사고소 예고장을 보낸 바 있고, 제일은행 방배동 지점은 소송이 취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독촉장을 보내곤 하였습니다(소갑제7호증 참조).

마. 이와 같이 채권자에 대한 신용불량자의 등재는 모두 그 등재 사유에 의심이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신용불량자의 말소는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겠지만, 만일 지금과 같이 9개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전화로만 계속하여 독촉만 한다면, 결국 채권자가 위 9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9개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 이는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어떠한 형태로든 결국은 9개 내외의 소송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일 그 때까지 계속하여 채권자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면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을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라는 불명예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채권자는 신용불량자의 등재를 정정할 것을 금융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정정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채권자의 신용불량 등재에 정당한 이의 사유가 있다면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바. 서울지방법원도 적색거래처의 지정에 정당한 이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을 상대로 적색거래처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라는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고(서울지방법원 1990. 5. 10. 90카35152결정), 이에 대하여 학설은 위 경우 은행연합회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적색거래처지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또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별첨 참고자료 ; 가처분의 연구, 김상원 외).

4. 지급보증 위탁계약의 체결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 | | | |
|-------------------|---------------|------|
| 1. 소갑제1호증 | 신용조회서 | 1통 |
| 1. 소갑제2호증의 1 내지 7 | 애경백화점 관련 소송자료 | 각 1통 |
| 1. 소갑제3호증의 1 내지 5 | 제일은행 관련 소송자료 | 각 1통 |
| 1. 소갑제4호증의 1 내지 2 | 삼풍건설 관련 소송자료 | 각 1통 |
| 1. 소갑제5호증의 1 내지 6 | 고소 관련 자료 | 각 1통 |
| 1. 소갑제6호증의 1 내지 5 | 각 편지 | 각 1통 |
| 1. 소갑제7호증의 1 내지 2 | 각 편지 | 각 1통 |

참고자료

1. 가처분의 연구(김상원 외)

첨부서류

- | | |
|------------|-----|
| 1. 위 소명방법 | 각1통 |
| 1. 법인등기부등본 | 1통 |
| 1. 위임장 | 1통 |

1999. 2.

신청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하승수

서울지방법원 귀중